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 련 1250
----------	-------------

제안연월일 : 2020년 12월 17일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국가사무 외에 원폭피해자에 대한 보충적 지원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원계획 수립 등의 사항을 임의 조항으로 함. (안 제4조)
- 시장은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안 제7조)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 중 “사람과 그 자녀 및 손자녀”를 “사람”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수립하여야 한다”를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사항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원폭피해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체육시설 및 복지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
2. 원폭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한 세부사항은 지원계획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원자폭탄 피해자(이하 “원폭피해자” 라 한다)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u>사람과 그 자녀 및 손자녀</u>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 ----- ----- ----- <u>사람</u>----- -----.</p>
<p>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폭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u>수립하여야 한다.</u></p> <p>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u>사항</u>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5. (생략)</p>	<p>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 ----- ----- ----- <u>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u></p> <p>② ----- <u>사항</u>을 포함한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제5조(실태조사) (생략)</p> <p><u><신설></u></p>	<p>제5조(실태조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같음할 수 있다.</u></p>
<p>제7조(시설 이용료 감면) 시장은 원폭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u>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u></p>	<p>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원폭피해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있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2.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

제8조(건강증진사업 등) ① 시장은 방사능에 따른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원폭피해자에 대하여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원폭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하여 원폭피해자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복지회관의 운영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기념사업) ① 시장은 사망한 원폭피해자의 영혼을 위로하고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체육시설 및 복지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
 2. 원폭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한 세부사항은 지원계획에서 별도로 정한다.

<삭 제>

<삭 제>

1. 추모묘역 및 위령탑

2. 그 밖에 피해자의 추모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폭피해자기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원폭피해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구성된 원폭피해자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제12조 (생략)

제13조 (생략)

<삭제>

제8조·제9조 (현행 제11조 및 제12조와 같음)

제10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폭탄 피해자의 고통 치유 및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원자폭탄 피해자(이하 “원폭피해자”라 한다)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폭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폭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추진방법
3. 재원 조달방안
4. 유관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원폭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원폭피해자의 건강상태, 생활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원폭피해자 지원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2.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에 대한 평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원폭피해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체육시설 및 복지시설 등의 이용료 감면
2. 원폭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한 세부사항은 지원계획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원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원폭피해자는 피폭
자건강수첩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자폭탄피해자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부처,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